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65
----------	-------

발의연월일 : 2025. 6. 30.

발 의 자 : 박민규 · 강준현 · 박희승
채현일 · 김우영 · 정동영
진선미 · 조계원 · 임호선
조인철 · 김용만 · 윤후덕
이재관 · 임미애 · 안도걸
염태영 · 하성무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소액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있으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어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대

학에 대한 소액 기부의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7절에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3(지방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한 기부금(이하 “지방대학기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지방대학기부금 $\times$ 110분의 100
2. 2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times$ 110분의 100 + (지방대학기부금 - 20만원) $\times$ 100분의 15
3. 1천만원 초과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times$ 110분의 100 + 980만원 $\times$ 100분의 15 + (지방대학기부금 - 1천만원) $\times$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방대학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지방대학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1조의3(지방대학기부금에 대</u> <u>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u> <u>「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u> <u>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u> <u>호에 따른 지방대학에 시설비</u> <u>·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u> <u>로 기부한 기부금(이하 “지방</u> <u>대학기부금”이라 한다)은 다음</u> <u>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u> <u>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u> <u>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u> <u>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u> <u>자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금액</u> <u>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2</u> <u>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u> <u>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u> <u>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u> <u>산입한다.</u> <u>1.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u> <u>한 경우: 지방대학기부금 × 1</u> <u>10분의 100</u> <u>2. 2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의</u> <u>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u>

$\frac{\times 110\text{분의 } 100 + (\text{지방대학 기부금} - 20\text{만원}) \times 100\text{분의 } 15}{15}$

3. 1천만원 초과 금액을 기부한 경우: $\frac{20\text{만원} \times 110\text{분의 } 100 + 980\text{만원} \times 100\text{분의 } 15 + (\text{지방대학기부금} - 1\text{천만원}) \times 100\text{분의 } 30}{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방대학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지방대학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